FINANCE INBODY

회계 처리에 관한 검토 의견서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B2B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의 회계·세무 처리

대외 제출용 · 직인 날인용

검토 대상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B2B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
요청 회사	주식회사 금융인바디
검토 기관	한빛회계법인
담당 회계사	윤태성 회계사
등록번호	3357
작성일	2026.05.15.

문서 구성 기준

본 문서는 원 회신 문서의 질문 취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 회계사님 의견을 유지하고, 대외 제출 및 날인에 적합하도록 의견서 형식으로 재구성한 문서입니다.

REQUEST BACKGROUND · 요청 배경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주식회사 금융인바디입니다.

당사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학습·자산관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 서비스를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법인 고객이 늘고 있으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CFO·재무팀이 "이 비용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계사님의 공식 의견서를 확보하여,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사에 객관적인 회계 처리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6 개 항목에 대해 회계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각 항목마다 질문의 배경과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리하였고, 그 아래에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본 요청서는 회계사님의 의견서 작성을 돕기 위한 사전 자료입니다. 각 항목의 질문 취지를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자유롭게 정정·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OVERVIEW · 당사 서비스 개요

의견 작성에 앞서, 당사 서비스의 구조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1) 서비스의 형태

1. 당사는 금융 학습·자산관리 콘텐츠와 도구를 앱·웹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2. 주요 기능: ETF·종목 학습 콘텐츠, 금융 뉴스·이슈 해설, 자산·포트폴리오 분석 도구(AI 인사이트), 투자 시뮬레이터 등.
3. 이용자는 앱·웹에 로그인하여 위 콘텐츠와 도구를 이용하는 구독형(SaaS) 구조입니다.

2) 기업 도입 시의 거래 구조

1.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 당사와 계약하여, 소속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2.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앱·웹 이용 권한을 복리후생으로 제공합니다.
3. 당사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4. 개념적으로 헬스장 단체 이용권, 도서·교육 콘텐츠 구독권을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당사가 이해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향 (검증 요청 대상)

당사는 이 거래를 "회사가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멤버십 이용권"으로 보고,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의 이해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은 회계사님의 의견을 따르고자 합니다.

OPINION REQUEST ITEMS · 의견 요청 항목

아래 6 개 항목은 ① 질문 취지 → ② 확인하고 싶은 내용 → ③ 회계사님 의견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당사 비즈니스 모델의 회계상 거래 성격

질문 취지	앞서 설명드린 “법인이 임직원용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을 구매하는 거래”를 회계상 어떤 성격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1. 이 거래가 회계상 어떤 유형의 지출(복리후생 / 교육훈련 / 지급수수료 / 기타)에 해당하는지 2. 당사가 이해하는 “B2B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 구매”라는 정의가 회계상 정확한 표현인지, 더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회계사님 의견

1 번째: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 교육훈련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본 서비스의 성격으로 보면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 회사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로 볼 경우 해당 비용이 임직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리후생비로 볼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 12 조 【비과세소득】 - 열거주의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 70 조의 2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60 조의 4 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 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 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 세 이하(6 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59 조의 4 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 명당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 20 조 및 제 21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처. 제 20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 20 조 및 제 164 조의 5 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 12 조제 3 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 의 2. 「영유아보육법」 제 14 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3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 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

[본조신설 2021.2.17]

소득세법 제 20 조 【근로소득】 - 포괄주의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12.31>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 21 조제 1 항제 22 호의 2 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 1 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 47 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38 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8.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7.24,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2.28>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12.29>

나. 삭제 <2021.2.17>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삭제 <2021.2.17>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제 4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 2 조제 8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25.12.30>
③ 법 제 20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 20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 제 52 조제 2 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25.2.28>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세청 2004. 11. 8.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1499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 12 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 11 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번째:
회계계정명에 재한은 없습니다.

질문 2. 회계 처리 결론 — 복리후생비 처리의 타당성

질문 취지	도입 고객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이 비용을 어떤 계정으로 잡느냐" 입니다. 당사는 복리후생비로 보고 있으나, 회계사님의 명확한 결론을 받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1. 회사가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이 멤버십 이용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 2.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예: 교육훈련비 등)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그 기준 3.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회계사님 의견

1 번째/2 번째:
질문 1 참고

3 번째: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질문 3. 회계 처리의 법령 근거

질문 취지	고객사 CFO·재무팀이 의견서를 신뢰하려면 "어떤 법령·해석에 근거한 결론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론의 법적 근거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1. 질문 2 의 회계 처리 결론을 뒷받침하는 법령 근거 (예: 법인세법 관련 조항 등) 2. 관련 국세청 예규·해석사례 또는 일관된 행정해석이 있다면 그 내용 3.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면 각각의 근거

회계사님 의견

1 번째/2 번째:
회계처리에 대한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질문 1 참고

3 번째:
해당 복리후생비가 임직원에 대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소득세법 적용 (질문 1 참고)

질문 4. 적용 가능한 회사 유형 — 법인 / 개인사업자 / 업종별

질문 취지	당사 고객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병·의원, 법률·회계사무소 등)도 포함됩니다. 회사 유형·업종에 따라 도입 가능 여부나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1. 법인과 개인사업자 각각에서 이 멤버십 이용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업종에 따라 처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예: 면세사업자인 의료기관 등)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제외하고 소속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계사님 의견

1 번째: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2 번째:
업종 및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른 제약 없음
3 번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 불산입대상임

질문 5. 직원 측 처리 — 근로소득 포함 여부

질문 취지	회사가 제공한 이 복지가 직원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혀 추가 세부담이 생기는지 여부는, 도입 고객사가 직원에게 안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1. 회사가 제공한 멤버십 이용권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회사 유형이나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3.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요건이 있다면)

✍ 회계사님 의견

1 번째:

질문 1 참고

2 번째:

달라지지 않습니다.

3 번째: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문 취지	당사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1. 회사가 이 멤버십 이용권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3.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회계사님 의견

1 번째/2 번째:

과세사업자의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3 번째: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본계정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OVERALL OPINION · 종합 의견

✍ 종합 의견 / 추가 안내사항

고객사는 직무관련성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하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니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TTESTATION · 작성자 정보

회계법인 / 사무소명	한빛회계법인
작성 회계사 성명	윤태성
등록번호	3357
작성일	2026.05.15.
서명 / 날인	

※ 안내 본 요청서의 "질문 취지"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금융인바디가 작성한 것으로, 회계사님의 검토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질문 자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견란에 자유롭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서의 내용과 표현은 전적으로 회계사님의 판단에 따릅니다.